

동반성장론(일반) 통합약정서(1차협력기업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동반성장론(일반) 통합약정서 (1차협력기업용 - 상환청구권 없음)</p> <p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p> <p>제 1 조 거래조건 ~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(기재생략)</p> <p>동반성장론(일반) 추가 약정서 (1 차협력기업용)</p> <p>제 1 조 (목적) ~ 제 4 조 (입금계좌) (기재생략)</p> <p>제 5 조 (건별대출의 신청)</p> <p>①~③ (기재생략)</p> <p>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1 차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⑥ (기재생략)</p> <p>제6조 (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) ~ 제16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p>	<p>동반성장론(일반) 통합약정서 (1차협력기업용 - 상환청구권 없음)</p> <p>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</p> <p>제 1 조 거래조건 ~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(현행과 같음)</p> <p>동반성장론(일반) 추가 약정서 (1 차협력기업용)</p> <p>제 1 조 (목적) ~ 제 4 조 (입금계좌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5 조 (건별대출의 신청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④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1 차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 (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) ~ 제16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</p>	<p>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 체상 및 용어 수정 체상</p>

<p>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
--	--	--

2. 개정 시행일: 2019년 7월 4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